

< 정 오 표 (1)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4.03.05

3. 주요 정정사항 :

- A-e, C-e 클래스 신설
- 환매수수료 변경

[규 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신설></p> <p>3. (생략)</p> <p>4. <신설></p> <p>5. (생략)</p>	<p>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현행과 동일)</p> <p>2. Class A-e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p> <p>3. (현행과 동일)</p> <p>4. Class C-e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p> <p>5. (현행과 동일)</p>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신설></p> <p>3. (생략)</p> <p>4. <신설></p> <p>5. (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동일)</p> <p>2. Class A-e 수익증권</p> <p>3. (현행과 동일)</p> <p>4. Class C-e 수익증권</p> <p>5. (현행과 동일)</p>
제39조(보수)	<p>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생략)</p> <p>2. <신설></p>	<p>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현행과 동일)</p> <p>2. Class A-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3</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1</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3. (생략)</p> <p>4. <신설></p> <p>5. (생략)</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3. (현행과 동일)</p> <p>4. Class C-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3</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p> <p>5. (현행과 동일)</p>
제40조(판매수수료)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Class A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0.8</p> <p>2. <신설></p> <p>③~⑤ (생략)</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p>1. Class A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0.8</p> <p>2. Class 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에 납입한 납입금액의 100분의 0.4</p> <p>③~⑤ (현행과 동일)</p>
제41조(환매수수료)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Class C, Class S 수익증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2. <신설></p> <p>2. Class A : 없음</p> <p>③ (생략)</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p>1. Class C, Class C-e, Class S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p> <p>2. Class A-e 수익증권</p> <p>가.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p> <p>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p> <p>3. Class A : 없음</p> <p>③ (현행과 동일)</p>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p>나. 종류형 구조</p> <p><신설></p>	<p>나. 종류형 구조</p> <p><A-e클래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격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수수료 및 보수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 보수: 운용(0.433), 판매(0.11), 신탁(0.03), 사무관리(0.015) <p><C-e클래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격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

		(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수수료 및 보수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보수: 운용(0.433), 판매(0.50), 신탁(0.03), 사무관리(0.015)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u>A-e, C-e클래스 신설</u>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A-e, C-e클래스 신설</u>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u>A-e, C-e클래스 신설</u>

[간이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A-e클래스> - 가입자격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수수료 및 보수 <u>환매수수료:</u> <u>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u> <u>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u> · 보수: 운용(0.433), 판매(0.11), 신탁(0.03), 사무관리(0.015) <C-e클래스> - 가입자격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수수료 및 보수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보수: 운용(0.433), 판매(0.50), 신탁(0.03), 사무관리(0.015)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시(누적)]	시(누적)] A-e, C-e클래스 신설
--	--------	--------------------------